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-146호

항만법 제29조,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「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(KDS 64 10 10 설계조건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09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
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(KDS 64 10 10 설계조건) 일부 개정

항만법 제29조,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「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(KDS 64 10 10 설계조건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. 기준명 :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(KDS 64 10 10 설계조건)

2. 구 분 : 일부개정

3. 목 적

- 그동안 항만구조물 등의 설계파 산정은 전해역 심해설계파(2005)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나, 해수면 상승 및 태풍강도 증가 등 최근의 해양 특성을 적용한 개정 심해설계파(2019)를 반영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(KDS 64 10 10 설계조건) 개정 필요

4. 개정내용

- '4.3.3 설계파랑의 통계분석'의 [참고] 중 심해설계파 적용 문헌 변경
- 최신 태풍·비태풍 자료 사용 및 검증으로 심해설계파 신뢰성 제고

* (당초)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 보고서(한국해양연구원, 2005)

(변경)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(해양수산부, 2019)

5. 관련단체 : 한국항만협회

(☎ 02-2165-0132, <http://www.koreaports.or.kr>)

※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(KDS 64 10 10 설계조건)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(☎ 044-200-5955, 5956) 또는 한국항만협회(☎ 02-2165-013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(www.mof.go.kr)와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(kpcs.portcals.go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끝.